

① 개정 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□ 「지방세법」 §71③③나목 및 §71③④나목은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(조정교부금 등)의 <u>안분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*에 규정하도록</u> 위임</p> <p>*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별표2~5에 안분기준과 안분금액 규정</p> <p>○ 「지방세법」 §71③③나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에 '금액'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</p> <p>○ §71③④나목은 세종과 제주에 시·군 조정교부금을 배분할 수 있도록 '시·군 조정교부금'을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'으로 규정하여,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범위에 '금액'이 명시</p>	<p>□ 안분에 관한 사항 중 <u>안분기준은 시행령 '별표'에서 '본문'으로 상향, 안분금액은 '별표'에서 '고시'로 위임</u> ⇒ 대부분 시행령 개정 필요</p> <p>○ 「지방세법」 §71③③나목은 <u>해당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만 개정 필요</u> ⇒ 법개정 불요</p> <p>○ 「지방세법」 §71③④나목은 <u>안분금액을 고시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에서 행안부 장관 고시로 재위임하는 규정 필요</u> ⇒ '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</u>'</p>

□ 개정 내용

- 매년 동일한 안분 기준에 따라 기계적·반복적으로 산출되는 안분 금액은 단순 수치에 불과, 시행령이 아닌 '고시'가 법체계에 부합
- 안분금액 산출에 필요한 '민간최종소비지출' 발표시기 변경(8월말→12월말)으로 안분이 시작되는 다음연도 2월까지 시행령 개정 불가
⇒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'안분금액'을 '행정안전부 장관 고시'로 위임